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4월 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3년 4월 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규정에는 비회기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 기간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 비회기 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최장기간 (30일)보다 더 길게 출석정지를 명하게 되는 것이며,
- 의원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처분 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징계보다 과중한 처분은 위법*하기에
*대전지방법원 판례 2019구합102801, 2020.6.24.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2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폐회)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2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규칙 제 호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u>현</u> <u>행</u>	<u>개</u> <u>정</u> <u>안</u>
제7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생략) ②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 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폐 회) 기간을 제외한다. ③ (생략)	제7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일 때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폐회) 기간을 제외한다.

③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제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02801 징계결의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피 고 B군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변 론 종 결 2020. 5. 27.
판 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15일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경부터 피고 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3. 26. 제24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소란 행위 등을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세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15일의 출석정지[금년도 상반기 회기 중 15일(2019. 5. 13.부터 2019. 5. 17.까지 및 2019. 6. 11.부터 2019. 6. 20.까지)]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고,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 |
|--|
| <p>○ 원고는 2019. 3. 11. 개최된 의원간담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원고가 피고 산하 신임건설위원회가 주관하는 'B군 물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인쇄물 제작을 위한 특정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의장으로부터 지적 및 주의 촉구를 받자, 큰소리와 함께 물병으로 탁자를 치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한 후 곧바로 의회사무과에 사직서를 제출함</p> <p>○ 의원들이 2019. 3. 17.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p> |
|--|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서 피고 의장의 발언에 큰소리로 항의를 표시하고 위 회의장을 나간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서는 피고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일 뿐이고, 그 항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그 정계사유에 비하여 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계사유의 존재

가)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정계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6조). 한편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이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나) 살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특정업체의 선정 등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을 당하자 큰소리를 치면서 물병으로 탁자를 치는 등의 소란을 피우면서 위 회의장을 나간 사실(이하 '이 사건 정계대상행위'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하여 지역 언론사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사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특정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공식석상에서 대화 등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소란을 벌인 행위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는바, 원고가 받은 15일의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심의하는 안전에 대하여 질의·발언·토론 및 표결권 등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15일 출석정지의 경우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권한 행사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 공무원의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라고 봄이 상당한바(더욱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출석정지기간은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위와 같은 중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로 품위손상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무엇보다 이 사건 처분은 2019년도 상반기 회기 중 15일(2019. 5. 13.부터 2019. 5. 17.까지 및 2019. 6. 11.부터 2019. 6. 20.까지)의 출석을 정지하는 내용인데,

③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 기간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 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이 예

정한 최장기간(30일)보다 더 길게 출석정지를 명하게 되는 점, ㉠ 지방의회 의사에 관한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의원 개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할 때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정한 징계보다 과중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출석정지 기간에 비회기 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 지방자치법 제88조 규정 내용에도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최리지

 판사 양해인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징계의결 관련)

충청북도의회운영전문위원-1457(2018.8.10.)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불임 질의회신서 1부, 끝.

행정안전부합의



주무관 양정아 행정시무관 신화영 대결 2018. 9. 18.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3124 (2018. 9. 18.) 접수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2-2100-3861 팩스번호 02-2100-4298 / hta1115@mail.go.kr / 대국민 공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효력 발생시점

□ 질의내용

-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본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
 - 효력발생 시점을 특정일로부터 연속된 30일로 의결할 수 있는지?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할 경우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 ※ 예시 :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의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다음 회기 시작일로부터 한다.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회신내용

- 대법원 판례(93누7341)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
-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발생 시점을 특정일로부터 연속된 30일로 의결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그 효력발생 시점은 비례 및 평등 원칙 등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불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함(대판 96누16698, 91누4300)

- 또한, 회의규칙에는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징계의 효력발생 시점 등과 같은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없을 것임